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환경부 공고 제 2005-195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7295호, 2004.12.31. 공포, 2006.1.1 시행)되어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이 종전에 대기환경규제지역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시행지역의 범위를 정하고, 이륜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3륜 이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이륜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대도시 대기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안

1)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지역중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지역을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용인시·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창원시로 정함(안 제45조의2 신설).

2) 위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되, 수도권 및 광역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그 밖에 도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함(부칙).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안

1) 2006년 이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되 2006년부터 유럽에서 2003년부터 적용하는 EURO-2 기준을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유럽의 2006년 기준인 EURO-3 기준을 적용함(안 별표 20).

2) 이륜자동차중 3륜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새로이 정하되 2006년부터는 농도측정 방식을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EURO-2 수준으로 정함(안 별표 20).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시행지역) 법 제3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경기도 용인시
2. 청주시·천안시·전주시·포항시·창원시

제48조제1항제19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동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법 제2조제1호의2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연화불화탄소를 말한다.

제71조제2항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의 신규등록신청”으로 한다.

제97조 본문중 “시·도지사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98조제1항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시·도지사는”을 “시장·군수·구청장은”으로, “시·도의”를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99조제2항중 “시·도지사에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13조 제목, 동조제1항 본문 및 동항제1호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을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16조제4항중 “환경관리인”을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제119조 본문 및 동조제1호중 “환경관리인”을 각각

“환경기술인”으로 한다.

별표 5 4. 비고란 제6호중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별표 5 4. 비고란 제7호중 “모페드형에 한한다”를 “모페드형(스쿠터형을 포함한다)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20 가목 5)의 비고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경자동차, 소형승용, 소형화물, 중형승용, 중형화물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측정방법을 CVS-75 모드에 같음하여 IM-240모드로 할 수 있다.

별표 20중 다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2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1호서식 앞쪽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뒤쪽중 “특별시·광역시·도”를 “시·군·구청”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서식 앞쪽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52호의2서식 앞쪽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뒤쪽중 “특별시·광역시·도”를 “시·군·구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대통령령 제19007호 〈하수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하수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수도법시행령”을 “하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중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3조 전단중 “법 제3조”를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구청장이 법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로, “각호”를 “각 호”로,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5항중 “환경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동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및 제2항제5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법 제6조제2항”을 “법 제6조제5항”으로, “제5조제1항 각호”를 “제5조제1항 각 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

하수도를 설치·변경 또는 폐지하거나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한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이 법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허가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에 설치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미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
2.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 또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는 지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항제1호중 “법 제6조”를 “법 제6조제3항”으로 하며, 동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의2.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조달 및 사용에 관한 협의
- 1의3. 법 제1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2.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공사의 중지·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의 명령(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공공하수도 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제7조제3항제1호중 “한국수자원공사법”을 “「한국수자원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한국토지공사법”을 “「한국토지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대한주택공사법”을 “「대한주택공사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공기업법」”으로 하고, 동항제6호중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을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으로 하며, 제11조의2제1호 및 제2호중 “산업표준화법”을 각각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하며, 동조제4호중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조제5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조제6호중 “산업발전법시행령”을 “「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7호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하며, 동조제8호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고, 제13조의2제1항제2호중 “환경관리공단법”을 “「환경관리공단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환경정책기본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하고, 제17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공고 제 2005 - 194호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17일

환경부장관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기준등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포장재의 재활용성을 높이고 국내기업들의 환경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권장하고,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포장재에 표시하고, 이를 신뢰하고 구입한 판매업자에게는 책임을 면제하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사 등”이라함)에게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지 않도록 권장함(안 제3조제1항).
- 나. 제조사등이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을 지킬 수 없다고 신청하는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성적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되, 판매업자 등이 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포장재에 표시하고 판매자에게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 다. 기타 한국환경자원공사법(법률 제7023호, 2003.12.30)개정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7296호, 2004.12.31)제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명칭변경(안 제5조 제1항)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사 등”이라 한다)는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사용하고,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재질의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유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시험방법 등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조제1항제1호의 “한국자원재생공사”를 “한국환경자원공사”로, 동조동항제2호의 “사단법인 환경마크협회”를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① 제조자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종류와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을 기재한 서류
 2.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등을 검토하여 제조자등이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제품을 판매한 자는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행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포장재의 재질 및 포장방법의 표시방법(제6조 관련)

검사결과	포장재질	1차:	2차:
	포장공간비율		% (기준: % 이하)
	포장횟수		차 (기준: 차 이내)
검사번호			
검사일자			
전문검사기관명			

비고 : 1. 포장재질은 포장차수 또는 내·외부 포장재별로 주된 재질을 표시한다.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분리배출표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2. 위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포장의 크기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를 표시할 수 있다.

◆ 부 칙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공고 제2005-191호

「습지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7461호, '05.3.31)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습지주변관리지역의 범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습지주변관리지역을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1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지정범위 관련 규정 삭제(제4조)
- 나.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정비(안 제5조, 제11조 제2항, 제11조의2, 제12조제1내지2호·6호,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 제20조제2항·제3항)
- 다.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통보(안 제7조제1항·제2항)
- 라.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신청을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제출시로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의2제2항)

〈습지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습지보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습지보전법시행령”을 “습지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제3항”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제8조제3항 및 제4항”으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시·도지사”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여 동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습지보호지역 등에서의 행위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시(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요청시)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호 및 제6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각각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1.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한 학술조사·연구

제15조제1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9조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및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각각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습지보전법”을 각각 “습지보전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1호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관리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농지법”을 “「농지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하천법”을 “「하천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6호중 “초지법”을 “「초지법」”으로 하며, 동조동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한다.

제12조제3호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보호법」”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산림법”을 “「산림법」”으로 하며, 동조제5호중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야생동·식물보호법」”로 한다.

제13조중 “공유수면매립법”을 “「공유수면매립법」”으로, “골재채취법”을 “「골재채취법」”으로 한다.

제17조의2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공고 제 2005-192호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월 4일

환경부장관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가 수행하고 있는 습지보전에 관한 기능을 국가와 시·도가 공동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의 일부개정(법률 제7461호, '05.3.31)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조사원 위촉 및 습지보호지역등의 표지설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도 부여함(안 제2조, 제5조의2)
- 나. 습지보전시설의 설치승인 신청을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위임(안 제6조)
- 다. 지방해양수산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습지보전시설의 이용료 징수권한을 추가로 부여(안 제10조의2)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습지보전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습지보전법시행규칙”을 “습지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을 각각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조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8조제4항에서”를 “법 제8조제5항에서”로 하고, 동조제4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은”을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을 “지방

환경관서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6조 각호외의 부분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1항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제3호중 “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를 “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동조제5항중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습지보전법”을 각각 “「습지보전법」”으로 한다

제8조중 “습지보전법시행령”을 “「습지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0조의2제4항제3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중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조동항제5호중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으로 한다.

제14조중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별지 제1호서식 내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공고 제 2005-180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품목에 대한 규정중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가 시행되는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하여 재활용기준비용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시행(’03.8.26)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안 제18조제1호 가목).
- 나. 가정용 살균·살충제의 용기를 합성수지용기로 사용함에 따라 이를 추가하여 금속캔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안 제18조제1호사호).
- 다. 발포합성수지 완충재가 전자제품외에도 전기제품 등에도 다량 사용되고 있어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대상에 전기제품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호).

라.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가 복합재질 필름류 포장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므로 단일재질 필름류 포장재의 재활용기준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그 밖의 단일재질 용기류 포장재 kg당 327원, 그 밖의 용기류 및 필름류 포장재 kg당 467원)하기 위함(안 별표 6 제1호).

마. 제품·포장재별 재활용기준비용에 프린터(kg당 367원), 복사기(kg당 239원), 팩시밀리(kg당 378원)를 추가함(안 별표 6 제6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가목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의 공전상의 건강기능식품,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하고, 동조동호사목중 “살균제로서 금속캔을 사용한 것에 한하며”를 “살균제를 말하며”로 하며, 동조제2호중 “전자제품”을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기기류,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 및 정보·사무기기”로 한다.

별표 4 비고란중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2호를 제1호로 한다.

별표 6제1호 라목의 (4) 및 (5)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의 아 내지 차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의 단일재질 용기류 포장재	kg당 327원
(5) 그 밖의 용기류 및 필름류 포장재	kg당 467원
아. 프린터	kg당 367원
자. 복사기	kg당 239원
차. 팩시밀리	kg당 378원

◆부 칙◆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 공고 제 2005 - 181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6년 1월 1일부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하여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활용방법 및 대당 재활용율을 정하고,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방법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에 대한 재활용방법 및 대당 중량기준재활용율(2008년까지는 65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80퍼센트 이상)을 정함(안 별표 4 제10호 가목).

나. 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방법에 재사용을 위한 수출 외에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출한 경우 재활용방법으로 인정함(안 별표 4 제10호 나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5조 본문중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본문중 “출고·수입실적서”를 “출고·수입실적서(전자문서로 된 실적서를 포함한다)”로, “서류”를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호중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서류(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수입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별표 4 제10호가목중 “세탁기·에어컨디셔너는 2005년말까지는 70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8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를 “세탁기·에어컨디셔너는 2005년말까지는 70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80퍼센트 이상, 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는 2008년까지는 65퍼센트 이상, 그 이후에는 80퍼센트 이상 이어야 한다”로 하며 동별표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재사용을 목적으로 수출하거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게 수출하는 경우

제1조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령”을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3조제6호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하고,

제4조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제11조제1항제1호중 “제품의 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한규칙”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5호라목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동별표제9호나목중 “석유사업법시행령”을 “석유사업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표 2 제3호 업종란중 “유통산업발전법”을 “유통산업발전법”으로 하고, 동별표비고 제3호중 “광진흥법”을 “광관진흥법”으로 하며, 동별표비고

제7호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별표 3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2호가목(4), 별표4 제6호다목 및 마목, 제8호다목 및 마목, 제9호중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을 각각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표 6 제3호나목중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 제3호서식, 제4호의2서식 내지 제8호서식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각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9호서식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한법률시행규칙”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9호의2서식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10호서식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동법 시행규칙”으로, 동서식 구비서류란 제3호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서식 작성요령란 ①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서식 동란 ③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11호서식 내지 제14호서식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각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별지 제15호서식 및 제16호서식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동법시행규칙”을 각각 “동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별지 제19호서식 작성요령란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동서식 동란 ②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 추가, 사업 계획 승인기관장의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영 개정령안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 등이 사업계획등을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절차 규정(서식) 신설(안 제1조의2)
- 나.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이 협의내용 이행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를 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절차규정(서식) 신설(안 제4조의2)
- 다. 영 개정령안 별표 1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을 추가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등 (별표 1)

◁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환경영향조사등에관한규칙”을 “「환경영향조사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사업계획등의 통보) 영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통보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협의내용 관리감독결과의 통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의 협의내용 관리감독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다.

별표 1 제2호(1)과 동호(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동호에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1), (2), (5), (6), (7), (8), (9), (11)의 사업
- (2)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1), (2), (3)(라)·(마), (4)(라)·(마), (5), (6), (7)의 사업
- (10) 영 별표 1 제1호파목의 사업으로서 위의 (1) 내지 (9)에 해당하는 사업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환경관계법규」 판매안내

법규 I (대기편), 법규 II (수질편), 법규 III (폐기물편)

• 정가 | 23,000원 • 구입문의 | 02)852-2291(연합회 사무국)

*자세한 세부목차는 연합회 홈페이지 “신간안내” 참조